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78
----------	-------

발의연월일 : 2021. 7. 12.

발 의 자 : 정경희 · 강대식 · 강민국
권명호 · 권영세 · 김도읍
김미애 · 김상훈 · 김석기
김선교 · 김성원 · 김영식
김예지 · 박대수 · 박대출
박성민 · 박진 · 배준영
배현진 · 백종현 · 서범수
서병수 · 서일준 · 서정숙
성일종 · 송석준 · 양금희
엄태영 · 유상범 · 윤두현
윤재옥 · 윤창현 · 윤희숙
이달곤 · 이만희 · 이명수
이양수 · 이영 · 이종성
이철규 · 이현승 · 전주혜
정찬민 · 조명희 · 조수진
조태용 · 최승재 · 최춘식
최형두 · 하영제 · 한무경
홍석준 · 황보승희 의원
(5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정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거 사무를 통할·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과거 일정기간 동안 정당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결격사유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참고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에도 각 근거 법률을 통해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임용·임명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 처리에 공정을 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등).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본문 중 “第7項”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第8項”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중 “第7項”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1항) 중 “第7項”을 “제8항”으로 한다.

- ⑦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 ① ~ ⑥ (생략) <u><신설></u> ⑦ (생략) ⑧ <u>第7項</u>의 規定에 의한 政黨 推薦委員의 추천은 당해 黨部 가 推薦政黨의 黨員이 아님을 증명하는 書類와 本人承諾書 및 住民登錄票 抄本을 첨부하 여 書面으로 제출한다. 다만, 國會議員選舉權이 있는지의 여 부에 대하여는 中央選舉管理委 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후에 調査할 수 있다. 이 경우 “黨部”라 함은 政黨法 第 3條의 規定에 의한 중앙당과 시·도당을 말하며 추천할 당해 黨部가 없을 때에는 그 上級 黨部가 추천한다.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u>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u>제8항</u>----- ----- ----- ----- -----, ----- ----- ----- ----- ----- ----- -----.

⑨ 政黨推薦委員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關係選舉管理委員會는 第8項의 規定에 의한 당해 黨部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國會議長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한 交渉團體를 구성된 政黨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이를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당해 政黨과 그 下級選舉管理委員會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⑪ 第7項의 規定에 따라 委員을 추천한 政黨이 國會에 交渉團體를 구성할 수 없는 政黨이 되고 새로 交渉團體를 구성하게 된 政黨이 있는 경우에는 그 政黨에서 추천한 者가 委員으로 위촉될 때까지 在任한다.

⑫ · ⑬ (생략)

⑩ -----

---제9항-----

-----.

⑪ -----제8항-----

-----.

⑫ 제8항-----

-----.

⑬ · ⑭ (현행 제12항 및 제13항과 같음)